

【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】

1. 기본요건

○ 광주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

※ 임대인은 임차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(장애인복지법 32조)에게 4년간 임대 의무 필요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
금액(원/월)	3,482,964원	5,415,712원	7,198,649원	8,248,467원	8,775,071원

<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청 발표('24.2.29) 기준>

○ 지원제외대상

- 국가·지자체·공공·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(수선유지급여 포함)

※ 다만, 편의시설·안전장치 설치 등의 개조내용(항목)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는 선정 가능

2. 선정기준

○ 1순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자, 그 외 2순위로 선정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
금액(원/월)	1,114,223원	1,841,305원	2,357,329원	2,864,957원	3,347,868원

<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50호, 기준 중위소득50% 기준>

○ 경합시 선정기준 (아래 순서에 따라)

-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, 뇌병변, 시각 장애인
-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
- 지체, 뇌병변,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과 중복된 장애인 가구
-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
- 개조가 시급한 주택(편의시설 설치 유·무, 노후도 등)에 거주하는 장애인
-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